GRI Issue Brief 이슈브리프

2023. 7. 14. (금)

▎작성자 : 혁신전략연구단 박진아 연구위원 (031-250-3152)
▎총 괄 :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 (031-250-3156)

"보호출산제, 임신·출산·양육의 실질적 지원과 함께 최후의 안전망으로 도입해야"

감사원 출생미신고 아동 조사 중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 출생미신고 아동 2,236명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실태 파악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감사원 보도자료, 2023.6.22.)
  - 또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2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시·읍·면장에 통보하는 제도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예정
  - 출생통보제 도입을 계기로 출생신고에 부담을 갖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살해·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보호출산제 도입은 재논의 예정
  -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산모 지원정책을 보강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예정(경향신문, 2023.6.27.)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출산과 영아살해 위험 감소라는 찬성 입장과 아동의 부모 알 권리 박탈과 양육 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공존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병원 밖 출산 방지' 및 '영아살해·유기 위험 감소'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동의 부모 알 권리 박탈'과 '양육 포기를 부추길 우려'를 표하며 논쟁이 지속됨

  *보호출산제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 (찬성)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한 '병원 밖 출산 방지', 산모 익명성 보호로 '영아살해·유기 위험 감소' 주장
  - (반대) 친모의 신원을 자녀에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부모 알 권리 박탈' 문제, 친모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하므로 입양 등 '양육 포기를 부추길 우려'를 표명
- 미혼모 출산·양육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만 도입할 경우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제도 도입 선결과제로 '미혼모 지원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영아 살해·유기 범죄 가해자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인 경우가 많아, 미혼모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더라도 미혼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인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 어려움이 컸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1.8%로 나타남(변수정 외, 2019)

  - 위기 임산부나 미혼모의 경우 가족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부 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미혼모를 위한 지원 정책이 거의 없으며, 미혼모 거주 시설도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함
  -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해서는 미혼모 출산·양육 지원 체계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 도입시 출생증서 열람 청구 조건을 확대하자는 의견
  - 김미애의원 입법안에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년 도달시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는 출생증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열람 가능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으로 '자녀의 출생증서 열람 청구 조건'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한국일보, 2023.6.28.)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국은 '익명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익명 출산 제도와 함께 '임신갈등상담소'를 운영해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친모의 양육을 지원

- 독일·프랑스·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익명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독일) 2013년 신뢰출산(vertrauliche Geburt)법을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 시 정부가 아이의 성을 정하고, 자녀가 16세가 되면 친생모 신상정보가 포함된 출생증명서 열람이 가능해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보장, 또한 임신갈등상담소를 운영해 홈페이지와 24시간 전국 핫라인 등을 통한 상담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을 돕고 양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입양·신뢰출산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지원
  - (프랑스) 익명출산제(L'accouchement sous X)는 친생모의 출산사실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 친생모와 자녀 간 친자관계의 단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이지은, 2015)
  - (미국) 영아피난소(Safe Haven)법으로,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영아피난소에 아기를 두도록 하고, 친부모 혹은 대리인의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영아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
- (시사점) 독일은 익명 출산과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있으며, 신뢰출산을 최후의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와 홈페이지, 24시간 전국 핫라인 등은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신뢰출산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도입시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위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가능한 친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호출산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함

(정책제언)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선결과제로 법제도 보완 및 미혼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는 (가칭)경기도 위기임신 지원센터 설립, 위기임신 온라인 상담소 개설, 24시간 핫라인 운영 확대 필요

- **(법제도 보완)** 보호출산제 법안 내용을 보완하여 친모의 익명 출산과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적절히 조화
  - 독일 사례와 같이 친모와 아동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출산제 법안 내용의 보완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로 출생증서 열람 청구 조건을 확대하고, 출생지·유전질환 등 정보 제공 검토
- **(미혼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시주거 지원,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임신과 출산 전 과정 지원
  -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뿐 아니라,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및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
  - 특히 위기 임산부의 경우 각종 정부 임신지원정책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기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 임신 및 출산 진료비·임시주거시설·양육비 지원 필요
- **(경기도 위기임신 지원센터 설립·온라인 상담소 개설)** 위기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가칭)경기도 위기임신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온라인 상담소를 개설해 미혼모 상담 지원
  - 위기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정보 및 미혼모 지원 정책, 보호출산제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칭)경기도 위기임신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필요
  - 위기 임산부나 미혼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설립해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소를 통해 미혼모가 임신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과 출산 지원 정책, 보호출산제 등 임신 및 출산, 양육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필요
-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24시간 핫라인 운영 확대)** 올 10월부터 운영 예정인 군포시·용인시의 위기 임산부 24시간 핫라인 및 전담 사회복지사 운영 제도를 경기북부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
  - 최근 경기도는 군포시·용인시의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위기 임산부 전담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배치해 상담을 통해 산전 검사와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할 계획을 밝힘, 이외에도 위기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출산비·양육용품을 지원할 계획(경향신문, 2023.7.2.)
  - 오는 10월부터 군포시·용인시 핫라인 운영이 계획된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에도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을 선정하여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